

의안번호	2210927
의 퇴 인	이성훈의원
회 답 일	2025. 7. 16.
추계번호	25C3283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의2(청소년쉼터 등의 퇴소조치 등) 신설	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본인이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청소년의 입소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음(제2항)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. 2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·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. 그 밖에 입소 중인 청소년을 계속하여 보호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의2(청소년쉼터 등의 퇴소조치 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(만24세)가 도과하여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어 입소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
 - 2024년 12월 말 기준,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·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 보호인원 비율이 청소년쉼터 63.2%, 청소년자립지원관 84.6%로서, 개정안에 따라 보호시설 내 일부 인원의 최대 지원기간이 늘어나더라도 현 시설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됨
 - 다만 현시점에서 추가되는 보호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한 추정이 어려워 지원요건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·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] 청소년복지시설 개소수 및 입소·이용 현황(2024년 말 기준)

구분	개소수(개)	정원(명) (A)	보호인원(명) (B)	비율(%) (B/A×100)
청소년쉼터	137	1,367	864	63.2
청소년자립지원관	13	416	352	84.6

자료: 여성가족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